

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(김주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94
----------	------

발의일 : 2015. 9. .

발의자 : 김주은·황동혁·강한욱·양창원·전갑봉·신희근·김명가·
최민규·김현상·최정아·서정택·김재열·이봉준·최정춘·김성근·김순희

1. 제안이유

-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, 안전점검,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·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라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점검결과 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안 제8조)
- 사.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안전지도 등을 위한 안전감시원 위촉에 관한 사항 (안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제16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함
- 다. 기 타
 - (1) 제 정 안 : 별 첨
 - (2) 입법예고(2015.9.4 ~ 9.10) :

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,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어린이놀이기구”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.
2.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관리·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.
3. “관리주체”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,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.

제3조(관리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2.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
3.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

4.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
5.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

제4조(예산 확보)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행위의 제한)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,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흡연, 음주, 가무, 방뇨 행위
2. 개, 고양이,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,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
3. 자동차,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·정차 행위
4.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(수목, 안전표지판 등) 훼손(파손) 행위
5.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
6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

제6조(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)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,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 항목은 별표와 같다.

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.

제7조(점검결과 조치)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8조(관리감독) 영 별표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제9조(안전감시원)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·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

구 분	점 검 항 목
부대 시설	○ 울타리, 의자,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
	○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
	○ 식수대,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
	○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
놀이터 공통 사항	○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, 휘어짐
	○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
	○ 놀이터 안은 전기, 고압선, 유독물질, 유리조각,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
	○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
	○ 놀이터의 배수,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
	○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
	○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
	○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
그네	○ 그네 고리('S' 혹)의 풀림 및 파손
	○ 그네 좌석판의 파손
	○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
	○ 그네 줄의 꼬임
	○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
	○ 그네 줄의 균형 상태
	○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,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
	○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
	○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
	○ 금이 간 곳의 존재
	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
	○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
	○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
미끄럼틀	○ 미끄럼틀 보호벽(난간)의 파손
	○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

구 분	점 검 항 목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○ 착지판의 흠 및 물의 존재 ○ 신체부위가 깔 수 있는 틈새의 존재 ○ 녹슨 부분은 없는가 ○ 금이 간 곳은 없는가 ○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○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○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
흔들 놀이 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(각도가 기준치의 초과) ○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○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○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○ 손잡이가 흔들림 ○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깔 수 있는 틈새 ○ 금속부분의 녹슌, 목재부분의 부식 ○ 기구의 금이 간 곳 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 ○ 돌출부나 거칠음 ○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
회전 놀이 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회전상태(베어링 상태) ○ 손잡이의 파손 ○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○ 회전축이 강도 ○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○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○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깔 수 있는 틈새 ○ 금속부분의 녹슌, 목재부분의 부식 ○ 금이 간 곳은 없는가 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

구 분	점 검 항 목
	○ 돌출부나 거칠음
	○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
정글짐 · 건너는 기구	○ 파이프가 휘어짐
	○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
	○ 금속부분의 녹슴
	○ 금이 간 곳은 없는가
	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
	○ 돌출부나 거칠음
	○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
오르는 기구	○ 그물망(체인, 타이어)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
	○ 손잡이(파이프, 체인, 타이어)의 파손(갈라짐, 휘어짐, 영킴, 벗겨짐)
	○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
	○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
	○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깔 수 있는 틈새
	○ 금속부분의 녹슴, 목재부분의 부식
	○ 금이 간 곳은 없는가
	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
	○ 돌출부나 거칠음
○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	
매달리는 기구 · 공중 놀이 기구	○ 손잡이 파이프(혹은 링)가 파손(갈라짐, 휘어짐)
	○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
	○ 신체부위(손, 발, 머리)가 깔 수 있는 틈새
	○ 금속부분의 녹슴, 목재부분의 부식
	○ 금이 간 곳은 없는가
	○ 페인트 칠이 벗겨짐
	○ 돌출부나 거칠음
○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	